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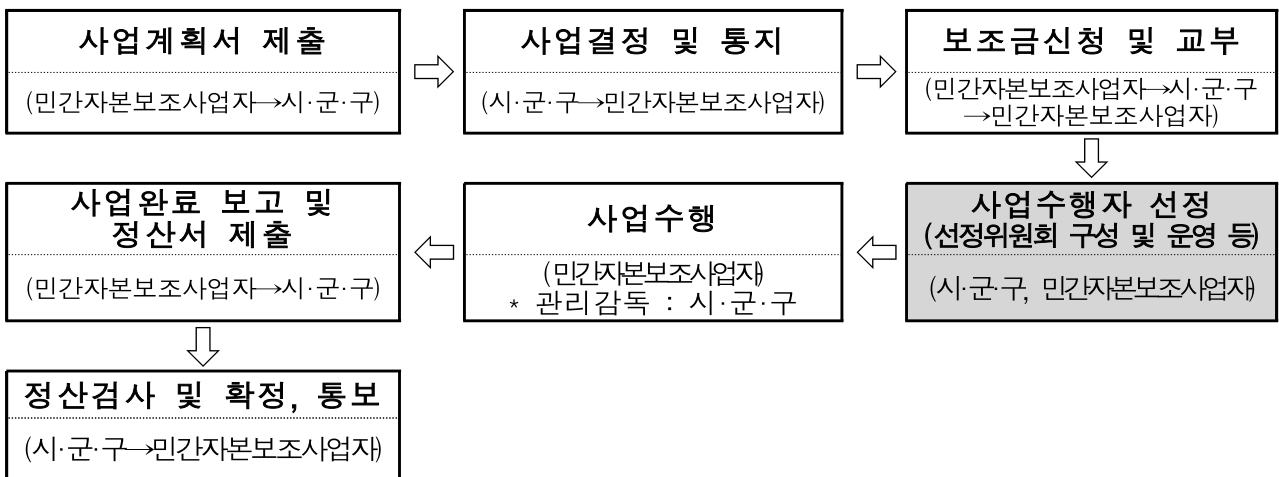
[별표 5] 민간자본보조사업 추진 지침

1. 적용범위 : 보수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자본 보조 예산과목으로 확정된 사업 중 일반입찰대상에 한함

*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은 제외

※ 국가 소유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관리단체)에서 직접 시행

2. 사업수행절차



3. 세부지침

① 사업수행자 선정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사업수행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직접 지방계약법에 따른 계약 또는 사업수행자 선정 위원회를 통해 사업수행자 선정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수행자 선정 의뢰 가능)

⇒ 사업수행자 선정을 의뢰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업무 대행

○ 사업수행자 선정위원회(7인) 구성·운영

위원장(1)	소유자·관리자 또는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 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을 대표하는 자(소유자로부터 위임받은 자 포함)
위원구성(6)	국가유산, 회계 등 관련분야 전문가(4) (관할 지자체 공무원도 포함 가능)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속해있는 종단, 협회, 교구본사, 보존회 등에서 정한 자(2)
역할	사업수행자 선정
선정방법	민간자본보조사업자가 제시한 결격사유가 없는 3개 이상 업체의 견적 등을 토대로 수행능력, 수행실적, 제시가격, 기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평가, 사업수행자 선정 * 분리발주(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여부 확인 등

※ 세부사항은 자체 실정에 따라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음

② 사업수행 관리감독 철저<지자체>

-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공무원이 설계 및 기술지도 자문회의 개최 등 실시
- 승인된 설계도서(재료, 품셈, 시방서 등)대로 시공되도록 수시 확인
- 사업완료 후 검사, 대가지급, 정산 등을 철저히 시행
- 공사·용역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 하자보수 등 지도

4. 민간자본보조사업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감리 대상이 될 경우, 감리의 독립성을 위해 지자체의 직접 사업으로 예산 편성 후 직접 계약하도록 권고